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확대 및 가입 비용 지원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01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확대 및 가입 비용 지원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10.

다.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 확대 및 가입 비용 지원(안 제39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비상설상영장 설치·경영자 모두 영화상영 관련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아닌 통합전산망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1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생략)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화상영관 경영자는</u>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u>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u> 는-----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 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

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

-----.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¹⁾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등 영화 상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고를 면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현행법상 통합전산망 가입이 의무이므로 영화 상영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전산망에 전송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상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비상설상영장을 운영함으로써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는 등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상설상영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비상설상영장의 신고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입장객 수 통계 등을 정확·신속하게 집계함으로써 공공의 관련 통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개정안은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도 의무적으로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전산망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전산망 정보 제공을 위한 발권시스템이 필요해 영세한 상영장에 부담이 초래

되므로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²⁾ 비상설상영장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가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용 지원 규정이 신설되면 국가재정에 부담³⁾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비상설상영장은 연간 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전산망 의무 가입 필요성이 낮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한국영화관산업협회는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통합전산망 가입을 위한 추가 시스템 투자비 및 유지보수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설상영관에 대한 수요 및 운영실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메가박스는 비상설상영관의 통합전산망 가입 수요 조사와 비용 지원 추정이

2) 통합전산망 가입의무자는 통합전산망에 제공할 자료를 누락·조작할 경우 현행법 제9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3)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1개 상영장 기준 연 1,080만원(월 90만원 : 온라인예매 발권 시스템 50만원, 매표용/매장용 키오스크 총 2대 40만원)으로 예측되며,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관과 같은 등록 절차가 없어 전체규모 파악이 어려워, 전국의 영화상영관 개수 570개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지원금액은 총 6,156백만원으로 산정됨(900,000원*12개월*570개소 = 6,156,000,000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참고자료 참조).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등의 입법취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정부 비용 지원 규정에 대한 심중검토필요 의견, 그리고 비상설상영관의 통합전산망 가입 수요 및 비용 추계 선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타부처, 공공기관, 협회 및 민간업계 등 의견

○ 타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 현행 유지 - 비상설상영장은 연간 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인 점 등을 고려시 통합전산망 의무 가입 필요성이 낮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

○ 공공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 주요내용
영화진흥위원회	• 개정안 제39조 제2항 - 개정안의 가입 의무조항 신설 시 해당 조항 위반으로 다수 비상설상영장이 제98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상설상영장 특성 상, 해당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영세시설, 임의공간 등)에서 비정기 영화상영 시, 해당공간에 상시 발권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와 물리적으로 발권시스템 운영불가 공간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비상설상영장도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통합전산망 가입 유도 및 신고 면제 대상으로 명문화 →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②항에 상영신고 면제대상에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 포함 * 참고 :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장소나 시설로 한다. • 개정안 제39조 제4항 - 지원 시 소요예산 별도 확보 필요 • 개정안 제41조 제1항 - 통합전산망 가입 시, 비상설상영장도 영화상영신고 면제가 되므로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조항 개정 불필요 *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과 같이, 비상설상영자 등록 규정 마련 선행 필요 * 영화상영관 지도관리 등 시군구 행정업무 일원화 유지 필요 ·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98조(과태료) 등등 • 개정안 제41조 제2항 - 현행법에는 통합전산망 가입으로 상영신고 면제대상이 영화상영관 경영자 만 명문화되어 있음. 비상설상영장도 통합전산망 가입으로 상영신고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영화관 산업협회	• 이견 없음 -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통합전산망가입을 위해 추가 시스템 투자비 및 유지보수에 따르는 비용예산의 발생에 따른 비상설 영화상영관에 대한 수요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범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혼선에 대한 우려가 있어보임.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 주요내용
메가박스	• 비상설 영화상영관은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영화 상영 공간으로 특정 장소에서 임시로 운영되며, 주로 문화행사나 특별한 테마에 맞춰 운영되는 곳임을 감안하였을 시 통합전산망 가입 수요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 • 수요 조사를 통해 통합전산망 설치에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유지보수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정 예산 및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